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6019 판결 [건물명도 등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부산 기장군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별지 1 도면 표시 2, 3, 6, 7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(가) 부분 182㎡를 인도하고,  
나. 2021. 7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허승

별지